

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, 인·허가 과정,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, **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**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시 청약자격의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

### |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|

<b>1</b>	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	• 3자녀 모두 만 19세 미만일 경우(태아포함) 신청가능 합니다.
<b>2</b>	경쟁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	• 경쟁 발생 시 당첨자는 별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.
<b>3</b>	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	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 (포항시 거주자, 전용 84㎡ 200만원 이상)

### |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|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계	100			
미성년 자녀수(1)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영유아 자녀수(2)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
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
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
세대구성(3)	5	3세대 이상	5	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
		한부모 가족	5	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무주택기간(4)	20	10년 이상	20	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해당 시·도 거주기간(5)	15	10년 이상	15	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 지역(경상북도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 시는 광역시, 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, 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입주자 저축 가입기간(6)	5	10년 이상	5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
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  
 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  
 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
 ※동점자 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
### |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 |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-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 3항)
당첨자 선정방법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(포항시) 거주자가 기타지역(경상북도, 대구광역시) 거주자보다 우선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”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•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순으로 공급합니다.

※ 상기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으로,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.

※ 본 홈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,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